

조교인사 규정

<제정 1980.03.01.>, <8차 개정 2022.06.27.>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」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조교의 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2 조 (적용범위) 우리 대학교 조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3 조 (구분과 정원) 조교는 일반조교와 교육조교로 구분하며 그 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4 조 (직무) 일반조교는 학사, 행정업무 및 학생지도를 보조하여야 하며, 교육조교는 기타 교육 관련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제 5 조 (자격) ① 일반조교는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자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타교출신자를 임용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② 교육조교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라야 한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6 조 (임용) ① 일반조교는 제5조 제1항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소속 학부(과)·전공 또는 부서장의 추천과 총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② 교육조교는 제5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소속 학부(과)·전공 또는 부서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[제목개정 2022.06.27.]

제 7 조 (임용기간) ① 일반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에는 1년 단임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1.16.>

② 교육조교는 학기 단위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8 조 (복무) ① 일반조교는 임용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우리 대학교 「복무규정」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② 교육조교는 방학을 제외한 학기중 소속부서의 필요한 근무시간에 복무하되, 주당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
제 9 조 (일반조교의 면직)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

3-1-4 조교인사 규정

있다. <개정 2011.11.16.>

1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할 때 <개정 2011.11.16.>
 2. 업무량 변화, 예산 감축 및 직제 등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<개정 2011.11.16., 2022.06.27>
 3. 신체 또는 정신상의 건강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<신설 2011.11.16, 개정 2022.06.27>
- [제목개정 2011.11.16. ,2022.06.27]

제 10 조 (보수 및 장학금) ① 일반조교의 보수는 우리 대학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<개정 2022.06.27.>

② 교육조교는 무급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6.27.>

제 11 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재직하는 조교는 이 규정을 적용하되, 다만, 임용기간은 임용당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조교의 임용기간은 제7조 제1항에 의한다.
[본부칙신설 2011.11.16.]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[본부칙신설 2022.06.27]